

2026년 제8회 공무직근로자(청소원) 채용 재공고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서 공무직근로자 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6. 6. 25.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1. 채용 예정 인원 및 담당업무

채용구분	선발직종	성별	모집 인원	담당예정 직무	근무예정지
공무직 근로자	청소원	무관	1명	- 청사 내·외부 환경미화 - 청사 내부 바닥청소·물건정리·쓰레기 수거 등 사무공간 및 민원실 화장실을 포함한 청사 환경 미화 등 - 청사 외부 청소물건정리쓰레기 수거 흡연장 청소 청사 외곽 미화 등 - 기타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미화 업무 ※ 청소원 근로자들 간 청사 내·외부 미화구역 분담(분기별 미화구역 순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151)

※ '26년 10월 중 청사 이전(서울 송파구 문정동) 예정

2. 근무 조건

신분	• 공무직 근로자 :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무기계약직) 근로자 - 단, 만 60세 이상 합격자는 기간제근로자로 채용 ※ 기타 근로조건 및 보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법무부 공무직 근로자 등 관리지침」 등에 따름
----	--

계약 기간	• (공무직근로자) 계약일로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음 ※ 단, 기간제근로자로 채용 시 계약일로부터 1년
보수	• 청소원 - 월 고정급 2,271,280원(세전) ※ (공통) 명절휴가비, 복지포인트는 소속기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지급
근무 체계 (시간)	• 4대 보험 가입 및 근로소득세 신고 ※ 계약서 작성 시 임금조건 안내 예정
	• 청소원 - 평일 주간근무(월~금, 06:30~15:30) ※ 중식시간이 포함될 경우 근무시간에서 제외 ※ 근무형태 및 근로 시간은 기관운영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응시자격 요건

가. 응시 자격 요건(공통)

○ 채용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인 자

※ 단, 60세(정년) 이상은 기간제근로자(1년)로 채용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의 합격기준에 적합한 신체 건강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는 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성별 : 구분 없음

○ 학력 및 경력 : 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또는 면제된 자

○ 근무 장소에 출퇴근이 가능한 자(관사 미제공)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각 호의 취업제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한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별표 1>

<별표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가점 및 우대 사항(해당자에 한함)

○ (가점) 사회형평 가점 대상자(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유효하게 등록된 자)

<사회형평 가점 대상자> 각 전형 단계별 만점의 3%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해당하는 자

※ 상기 요소들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1개에 한해 인정(증빙서류 필수)

※ 접수여부 미확인, 응시원서에 미 기재 또는 오 기재 하거나, 증빙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귀책임

※ 장애인의 경우, 보조인의 도움 없이 직무 수행이 가능하여야 함

- (우대요건)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증빙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증빙서류 제출 건에 한하여 인정)

분야	우대사항
청소원	• (경력) 관련분야 근무 경력자(공공기관 또는 민간업체 시설 미화 업무 등)

- ※ (경력) 3개월 이상 경력부터 인정하며 인턴, 자원봉사, 의무복무 기간 경력은 불인정, 경력증명서(근무기간, 주당 근무시간,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재 및 발급 담당자 연락처가 명시된 경우만 인정),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제출, 2개 이상의 관련 경력이 있는 경우 일 단위까지 합산하여 인정하되, 일 단위는 15일 이상인 경우만 1월로 인정함(시간제 근무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산정)

4. 채용 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서면심사
-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응시자격, 제출 서류를 검토한 후 서류전형 심사기준 적격여부에 따라 합격 여부를 결정
 - 응시자가 6명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평정 성적이 높은 순으로 5배수 이하의 합격자를 결정(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전원 합격처리)

[서류전형 심사기준]

◎ (청소원)

- 근로자로서의 소양(자기소개서 및 이력서 평가) : 60점(차등 적용)
- 공공기관 또는 민간업체 시설 미화 업무 근무경력 : 40점(차등 적용)
 - 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으며, 3개월 이상 경력부터 인정하고 인턴 경력 및 자원봉사 활동 경력은 불인정함
 - 경력증명서(근무기간,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와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제출, 2개 이상의 관련 경력이 있는 경우 일 단위까지 합산하여 인정하되, 일 단위는 15일 이상인 경우만 1월로 인정함

◎ (공통) 저소득층 등 사회형평 가점: 3점(가산)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 근로자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에 대해 평가

< 면접시험 평정요소 >

- | | |
|----------------------|------------------|
| (1) 근로자로서의 정신자세 |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 (4) 예의, 품행 및 성실성 |
| (5)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

- 응시자 1명에 대해 개별면접 실시

다. 최종 합격자 : 서류전형 합격자 중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선발(채용예정 인원)

※ 동점자 발생 시, 사회형평적 채용 대상자, 서류전형 성적 우수자 순으로 결정

라. 예비 합격자 : 불합격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채용예정 인원의 2배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예비합격자 선발 가능

5. 채용 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채용재공고 기간	'26. 6. 25.(목) ~ 7. 2.(목)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나라일터 사이트 게시
원서접수 기간	'26. 6. 25.(목) ~ 7. 2.(목) 18:00	방문, 등기우편 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일	'26. 7. 7.(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게시 및 (합격자)개별통보
면접전형	'26. 7. 9.(목)	서울출입국·외국인청 7층 소회의실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151)
최종합격자 발표일	'26. 7. 10.(금)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게시 및 (합격자)개별통보
채용후보자 등록	'26. 7. 16.(목) 18:00까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7층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151)
채용 예정일	'26. 7월 중	결격사유 조회 경력검증 기간에 따라 변동 가능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사전에 개별 통지

6.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6. 6. 25.(목) ~ 7. 2.(목) 18:00
- 접수처 : 서울출입국·외국인청 7층 총무과(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151)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 전부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접수
(방문 제출 또는 등기우편* 접수 중 택일)
 - * 접수처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51, 서울출입국외국인청 7층 총무과
채용담당자 앞(겉지에 '응시원서 재증(청소원)' 표기)
 - ※ 등기우편 접수의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한 접수로 인정
하며 서류전형 심사대상이 됨(이메일, 일반우편, 택배, 퀵서비스 등 접수 불가)
 - ※ 등기우편 접수자에 한하여 응시번호는 원서접수 마감 후 휴대전화 문자로 전송하고,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일에 응시표 교부
 - ※ 접수시간 : 평일 근무시간(09:00~18:00) / 단, 점심시간(12:00~13:00)은 제외
 - ※ 토·일요일, 공휴일에는 응시원서 접수 불가함
- 방문접수 원서에 대해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응시원서 하단의 응시표
부분에 응시번호 기재 및 접수 간인(間印) 날인 후 절취하여 교부(면접시험
당일 지참)
- 접수 여부 미확인, 응시원서 오기재 또는 미기재, 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 귀책임
- 채용예정인원 대비 응시자가 6배수 이상인 경우, 서류전형 합격자를
5배수 이내로 제한할 수 있음
- 서류전형 및 최종합격자에 한해 합격자 발표 시 개별적으로 연락 예정

7. 제출 서류(응시원서 접수 시,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제출 서류

- ① 서류전형 제출서류 총괄표 【붙임 1】
- ② 응시원서 1부 【붙임 2】
- ③ 이력서 1부 【붙임 3】
- ④ 자기소개서 1부 【붙임 4】

- ⑤ 주민등록초본 1부(생년월일만 표기, 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필수)
 - (남 성) 주민등록초본에 병역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군복무확인서 사본 1부 추가 제출
- ⑥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1부 【붙임 5】
 - ※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는 동의여부를 체크하고 서명 후 제출
- ⑦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붙임 6】
- ⑧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붙임 7】
- ⑨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붙임 8】
- ⑩ (우대) 경력(재직)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확인 가능하도록, 근무기간, 직위(또는 직급), 담당업무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기관(회사) 명과 직인, 발급확인자의 서명(날인) 및 연락처 명시(별도서식이 없는 경우 【붙임 10】 작성 제출), 담당업무, 근무기간 및 주당 근무시간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을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⑪ (우대)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면접일에 원본 제시)~~
 - ~~- 무도 자격증 사본 1부~~
 - ~~- 응급구조사 자격증 사본 1부~~
 - ~~- 이학성적표 등 사본 1부(최종합격자 발표일 기준 유효한 이학성적표 등)~~
- ⑫ (가산) 사회형평 가점 대상자 증명서류 사본(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 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필수**) 등 증빙서류 제출
 - 장애인의 경우 보조인의 도움 없이 직무수행이 가능하여야 하며, 장애인 증명서류 제출시 '**장애종류 및 장애정도**' 명시 필수

8. 참고사항

- 피채용인은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서,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을 적용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을 적용합니다.
-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이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채용신체 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합니다.

- 최종합격자가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예비합격자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관련 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 기간 보관됩니다.

※ 반환 청구기간 : '26. 7. 10.(금) ~ '26. 8. 9.(일), 주말·공휴일·대체공휴일 제외

※ 반환 청구방법 : [붙임11]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응시원서 접수처로 제출(사전 연락 후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제출)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공무원임용 및 「법무부 공무원 등 근로자 관리지침」의 채용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처리할 계획입니다.
-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반드시 국문 번역본을 함께 첨부하여야 합니다(영문 제외)
- 제출서류는 기한 내에 빠짐없이 제출되어야 하며 미제출 서류가 있거나 제출된 자료의 중요한 사항이 미비(서명 누락)할 경우에는 서류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접수기간 이후에는 기재사항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총무과(채용담당자 : 조혜은, ☎ 02-2650-6221)으로 연락바랍니다.

【붙임 1】

서류전형 증빙자료 제출서류 총괄표

성명	생년월일	응시기관	응시분야(해당분야 ☒ 체크)
		서울출입국·외국인청	공무직근로자 ☐ 청소원 / ☐ 보호경비대원

■ 작성목록(총괄표)

목 록	제출여부
① 서류전형 제출서류 총괄표 1부, 【붙임 1】 (공통, 필수)	☐ 제출 ☐ 미제출
② 응시원서 1부, 【붙임 2】 (공통, 필수)	☐ 제출 ☐ 미제출
③ 이력서 1부, 【붙임 3】 (공통, 필수)	☐ 제출 ☐ 미제출
④ 자기소개서 1부, 【붙임 4】 (공통, 필수)	☐ 제출 ☐ 미제출
⑤ 주민등록부 초본 (생년월일만 표기) 각 1부 (공통, 필수) ※ 단, 남성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병역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군복무확인서 사본 1부' 추가 제출)	☐ 제출 ☐ 미제출
⑥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붙임 5】 (공통, 필수)	☐ 제출 ☐ 미제출
⑦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붙임 6】 (공통, 필수)	☐ 제출 ☐ 미제출
⑧ 비위 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1부, 【붙임 7】 (공통, 필수)	☐ 제출 ☐ 미제출
⑨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 【붙임 8】 (공통, 필수)	☐ 제출 ☐ 미제출
⑩ 우대요건 관련 근무경력(재직) 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1부 (경력(재직) 증명서 제출 시 필수) ※ 근무기관의 경력(재직)증명서에 별도 서식이 없는 경우 【붙임 9】 작성 제출	☐ 제출 ☐ 미제출
⑪ 우대요건 관련 자격증(무도, 응급구조사) 또는 어학성적표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제출 ☐ 미제출
⑫ 사회형평 가점 대상자 증명서류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제출 ☐ 미제출

※ ☐에는 서류제출여부를 ☒하여 맨 앞장에 철하여 제출

※ 증빙서류(사본)에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이 표시되지 않도록 조치 후 제출

※ 제출서류는 순서대로 집계를 사용하여 편철(건출지, **스테플러 사용금지**)

2026. . .

작성자 : (서명)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귀하

【붙임 2】

응시원서

본인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시행 2026년 제8회 공무원 근로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 하였을 때에는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주관 채용시험에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응시업무	☐ 청소원 ☐ 보호경비대원							(한자)
주민등록 번호						-	복수국적 해당여부	☐ 해당() ☐ 해당없음
주 소	(우)							
전자우편								
전 화 (휴대전화)					휴대전화			

응시표 2026년 제8회 공무원 근로자 채용시험

※응시번호			응시업무	☐ 청소원 ☐ 보호경비대원
성명	(한글)	생월생일	. .	
2026년 월 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㉞				

주의사항

-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2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업무 : ‘청소원’ 선택 기재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 · 생년월일 · 전자우편 · (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 국적명 기재
 - 반드시 복수국적 여부 체크
6. 그 밖에 자필 서명란 빠짐없이 기재

【붙임 3】

이 력 서

1. 인적사항			
성명		응시분야	☐ 청소원 ☐ 보호경비대원
생년월일	년 월 일		
병역사항	☐ 필 ☐ 미필 ☐ 면제 ☐ 해당사항 없음		
주소			
연락처	(본인휴대폰)	전자우편	
	(비상연락처)		
추가항목	☐ 사회형평 가점 대상자		

2. 경력사항

근무지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		
	~		
	~		

3. 자격사항

* 지원직무 관련 국가기술/전문자격, 국가공인민간자격을 기입해 주십시오.

자격증명	발급기관	취득일자	자격증명	발급기관	취득일자

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지원자 : _____(서명)

※ 경력·자격사항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이용 가능(응시분야 해당 경력만 기재)

※ 경력·자격 등 기재 시 반드시 연·월·일을 기재

【붙임 4】

자 기 소 개 서

성명		응시업무	
----	--	------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 직업, 배우자 직업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작성하실 때 아래 내용은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1. 자기소개서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지원동기, 생활신조와 가치관, 성격의 장·단점, 직장구성원으로서의 바람직한 태도, 앞으로의 각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합니다.
2. 분량은 A4용지 2매 이내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합니다.
서명은 자필로 합니다.
(폰트는 휴먼명조, 글씨크기 13, 줄간격 160mm, 글자색 : 검정색)

※ 내용 중에 **출신학교명과 출생지**는 밝히지 않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귀하

※ 분량은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하고 서명은 반드시 자필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5】

개인정보 제공 · 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기간제근로자 채용 관련

(2) 개인정보 수집 항목

○ 고유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정보(자기소개서, 범죄경력 등), 주소, 전화번호, 학력사항, 경력사항, 자격사항 등 채용심사에 필요한 제반 사항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보존사유 :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관리

○ 보존기간 : 채용 후 퇴직일 까지

○ 보존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4)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근거자료 확인 불가로 인해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위해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기간제근로자 채용 관련

(2) 고유식별정보 수집 항목

○ 주민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보존사유 :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관리

○ 보존기간 : 채용 후 퇴직일 까지

○ 보존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3조, 제24조, 시행령 제18조, 제19조

(4) 고유식별정보의 수집 및 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근거자료 확인불가로 인해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위해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기간제근로자 채용 관련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 자기소개서, 범죄경력정보 등

(3) 고유식별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보존사유 :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관리

○ 보존기간 : 채용 후 퇴직일 까지

○ 보존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4) 민감정보의 수집 및 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근거자료 확인 불가로 인해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귀하

【붙임 6】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본인은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시행 2026년도 제8회 공무원직근로자 채용시험 응시자로서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이 실시하는 경력, 자격증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합니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귀하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공공기관의 신규 직원 지원자 작성용-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공공근로)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1. 공직자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 ----- ☒ 있음 ☐ 없음 ☐

※ 공직자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 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중, 퇴직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 부패행위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여비 부당수령 → 부패행위 해당

3-1.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는지

3-2. 현재 위 퇴직일(당연퇴직·파면·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내)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1호)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내)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개정된 것)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1, 2, 3-1, 3-2 (모두 충족)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해당 여부 — ☒ 해당 ☐ 해당 ☐

1, 2, 4-1, 4-2, 4-3 (모두 충족)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해당 여부 — ☒ 해당 ☐ 해당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면접자료 등으로 활용 불가)

2026년 월 일

성 명 :

(서 명)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귀하

【붙임 8】

-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서약서 -

본인은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기간제근로자(사무보조원)에 채용되면서 ‘법무부 공무원 등 근로자 관리지침’ 제8조(채용결격 사유)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의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 취소 등 법적 책임을 다할 것에 동의합니다.

<결격사유>

-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 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예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귀하

【붙임 9】

경력(재직) 증명서

경력(재직) 증명서

인적 사항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주소						
경력 사항	근무기간		소속 (근무처)	직위 (직급)	담당업무 ①	주당근무시간	비고 ②
	부터	까지					
상별 사항	포 상				징 계		
	연월일		종 류	시행청	연월일	종 류	시행청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증명기관명 : _____

주 소 : _____

전화 번호 : _____

사업자등록번호 : _____

대표자 : _____ (인)

발 급 자	
소 속	
직 급	
연 락 처	
성 명	(인)

① 담당업무 : 수행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재

② 비 고 : 기타 참고사항이 있을 경우 구체적으로 기재(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등 기재)

【붙임 10】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6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